


Fair 
Player
Club



준법 ·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2016년 11월 30일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대전시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4:00-17:00
- 장소 :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 주최 : 대전광역시·대전상공회의소·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관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 시 간 | | 프로그램 |
|-------------|-----|--|
| 14:00~14:05 | 5' | 개회사 - 대전상공회의소 박희원 회장 |
| 14:05-14:10 | 5' | 축사 - 대전광역시 이현주 정무부시장 |
| 14:10-14:15 | 5' | 환영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
| 14:15-14:20 | 5' | 사진 촬영 |
| 14:20-14:40 | 20' | 대전광역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 |
| 14:40-15:10 | 30' | 청탁금지법 관련 국내기업 대응방안 - EY 한영 백승재 전무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초대회장) |
| 15:10-15:40 | 3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
| 15:40-15:50 | 10' | 휴식 시간 |
| 15:50-16:00 | 10' |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소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 |
| 16:00-16:40 | 4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준법윤리경영 사례 발표 (각 20분) -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지속가능경영담당 백경목 차장 -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 |
| 16:40-16:50 | 10'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 및 반부패 서약 (Fair Play) 안내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 |
| 16:50-17:00 | 10' | 질의응답 및 폐회 |



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대전광역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고종승

대전광역시 감사관

대전광역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2016. 11. 30(수) / 대전상공회의소



순서

I. 대전의 현재 모습

II. 민선6기 시정방향

III. 2015년 청렴도 평가 결과

IV.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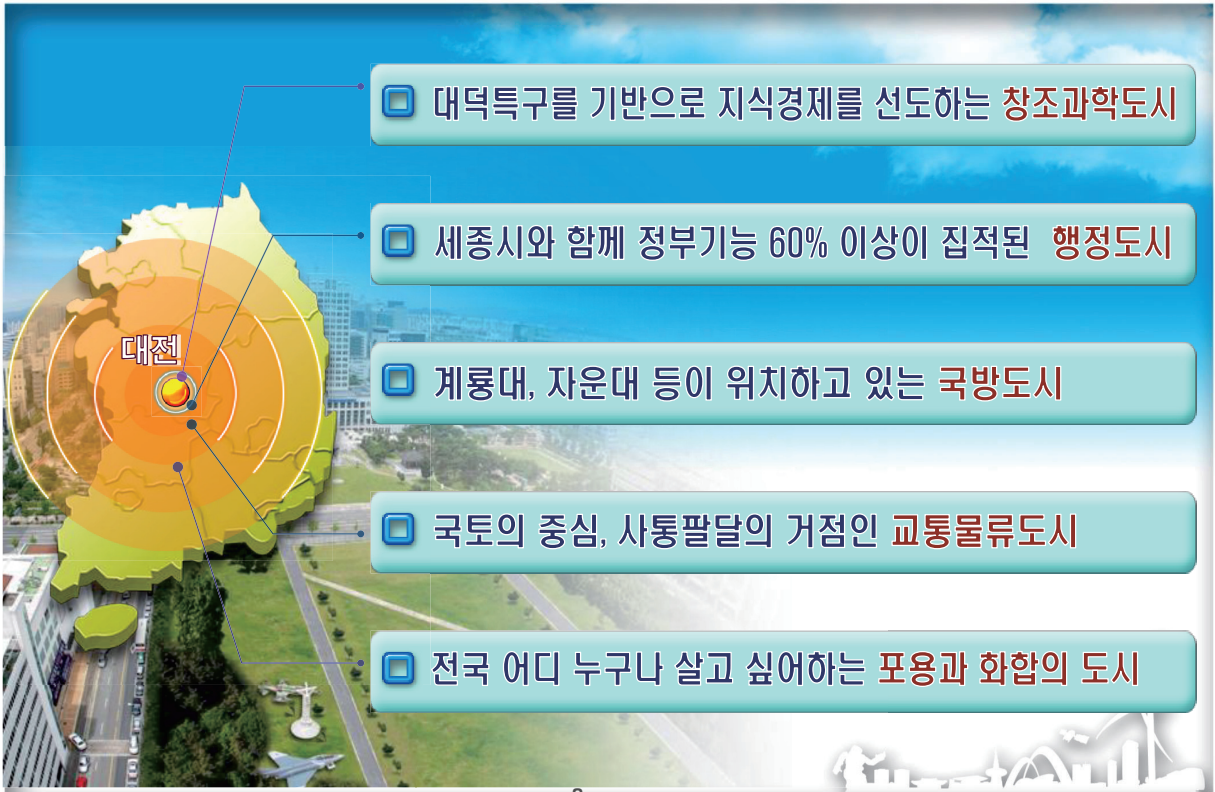
I . 대전의 현재모습



1. 도시 현황

| | |
|-------------------------|---|
| 인 구 | 153만 명 (전국의 3.0%) ※전국에서 4번째로 젊은 도시 ▶ 면적 540km ² (전국의 0.5%) |
| 행정구역 | 5개 자치구 78개 동 (법정동 177개) ▶ 공무원 7,250명(시 3,432, 구 3,818) |
| 재 정 (예 산) | 4조 3,128억 원 (재정자립도 45%) ▶ 자치구 1조 8,918억 원 |
| 지역내총생산 (GRDP) | 32조 8천억 원 (전국의 2.2%) ▶ 1인당 GRDP 2,122만 원(2014년) |

2. 도시 위상



II. 민선6기 시정방향



1. 민선6기 시정비전



2. 핵심과제

- 1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경제」 실현
 - 2 대전의 매력과 가치가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
 - 3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 건설
 - 4 친환경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 혁신
 - 5 시민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문화.복지」
 - 6 소통과 참여,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시정」
- 6

3. 3대 역점과제

01

행복경제 123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 국내총생산 3% 달성



02

조화로운 도시재생

역사와 문화가 있는 원도심 활성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형 재생 프로그램



03

대중교통 혁신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구축 선진화된 교통문화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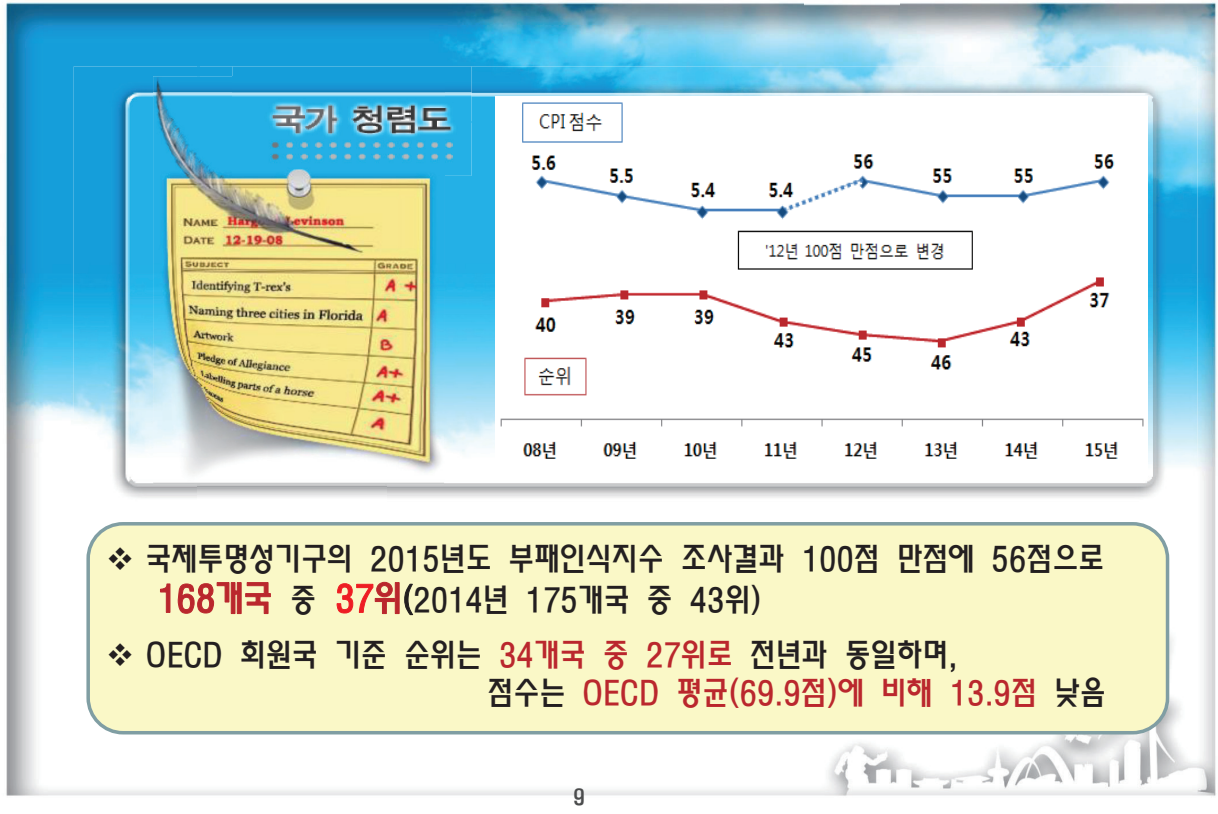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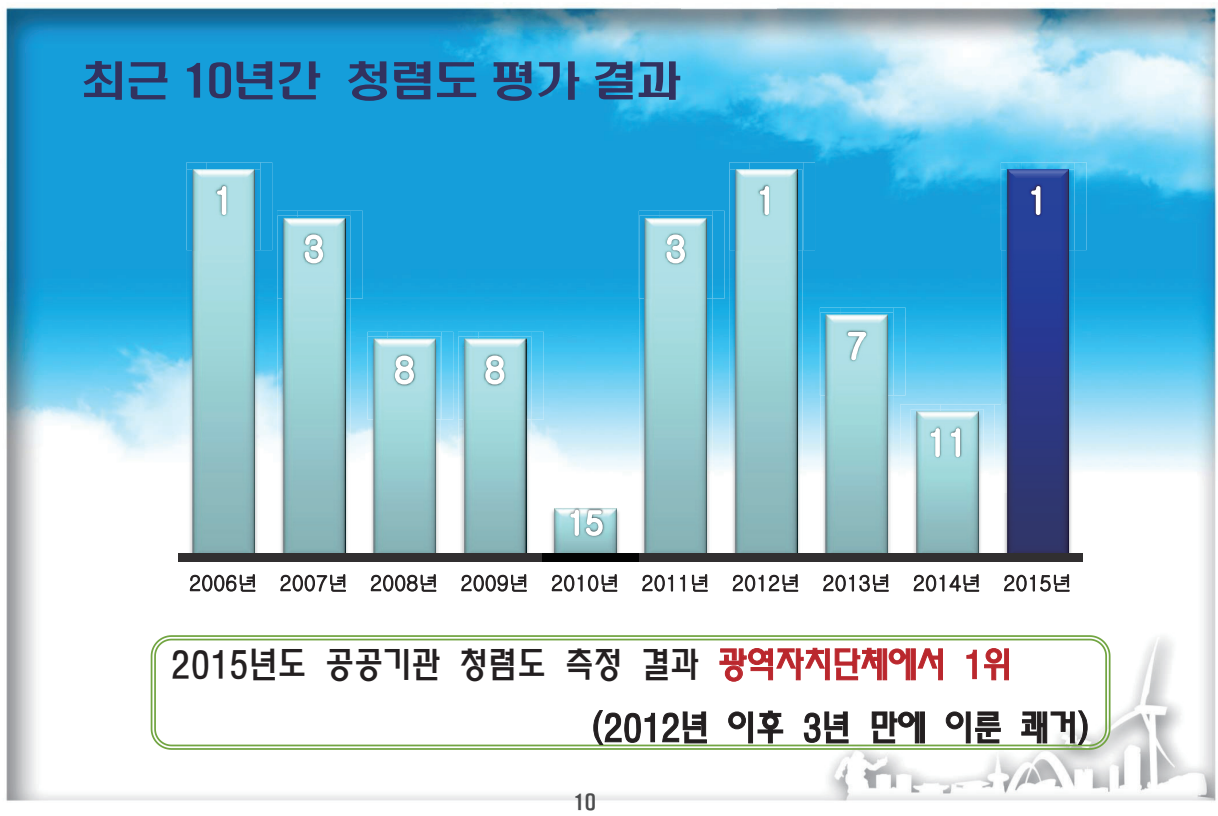
Ⅲ. 2015년 청렴도 평가 경과



1.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



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3. 2016년 부패방지 청렴시책

| | |
|---|--|
| <div data-bbox="311 264 726 340" data-label="Section-Header"> <h4>정부정책 연계추진</h4> </div> <div data-bbox="263 324 778 577"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실시간 부패감시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 내부 클린시스템 운영 </div> | <div data-bbox="853 264 1332 340" data-label="Section-Header"> <h4>청렴 생태계 조성</h4> </div> <div data-bbox="837 324 1356 577"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거버넌스 구성 활동(대전 청렴네트워크) ● 고위직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 자치구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청렴시책 평가 </div> |
| <div data-bbox="311 627 726 703" data-label="Section-Header"> <h4>부패유발 요인 제거</h4> </div> <div data-bbox="263 687 778 94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영향평가 운영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 ● 부패 행위자 처벌 강화 및 공개, 취약분야 예방 시스템 운영 </div> | <div data-bbox="853 627 1332 703" data-label="Section-Header"> <h4>청렴문화 정착</h4> </div> <div data-bbox="837 687 1356 94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교육의 내실화 ●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및 홍보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 홍보 및 자체감사 실시 </div> |




IV.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1. 법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자

- ✓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12

2. 부정청탁의 대상업무(법제5조제1항)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 | | | |
|---------------------|------------------------|---------------------------|---------------------------|--------------------------------|
| 1 | 2 | 3 | 4 | 5 |
|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
|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 처리·조작 | 징병검사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목인 | 사건의 수사·재판등 업무 처리 |

13

3. 부정청탁의 예외(법제5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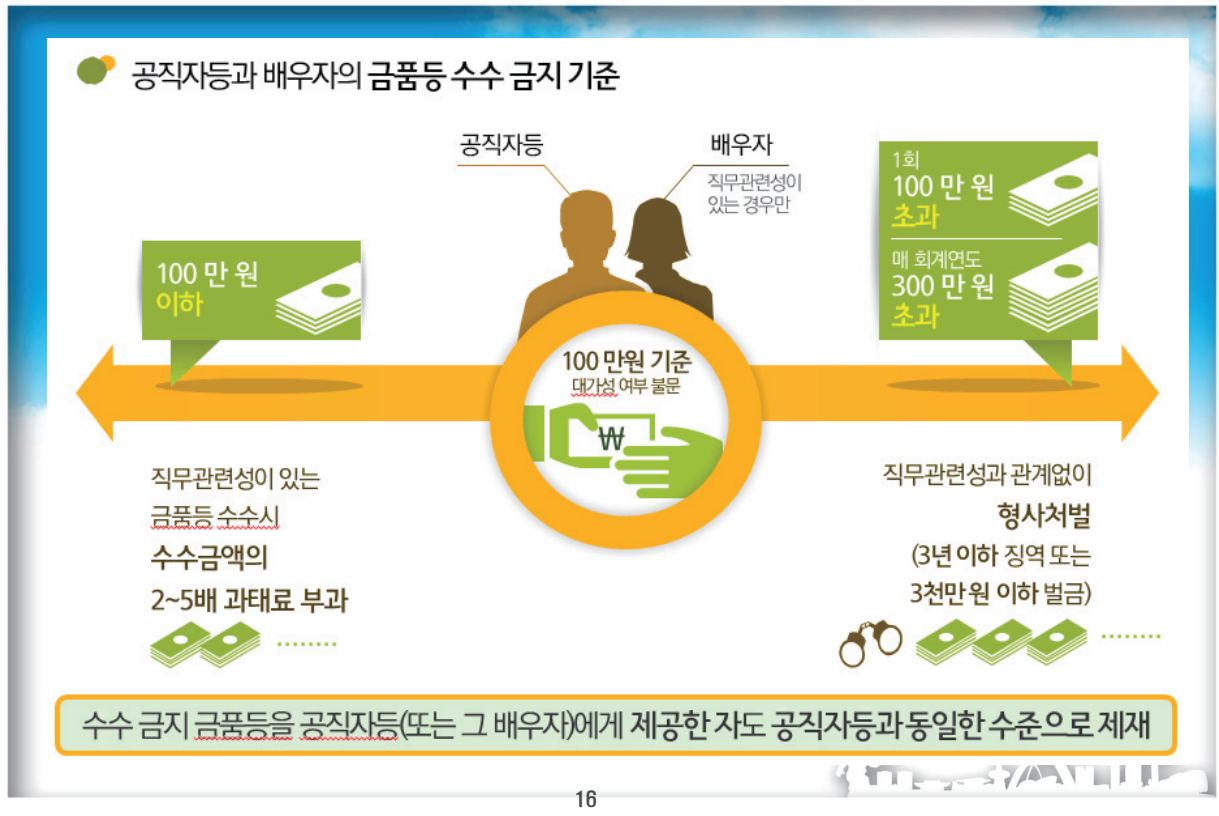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 | | |
|--|--------------------------------------|--|--------------------------------|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

4. 부정청탁 위반 시 제재 수준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제재 없음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 수수 금지 금품등의 기준(법제8조제3항, 제2항)



6.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법제8조제3항)

1.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2. 제2호(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3.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5.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7.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8.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17

7. 양벌규정(법 제24조)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법인·단체 또는 개인(고용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 기능

18

8. 사전 준비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초청 특강

- 일시 및 장소 : 2016. 3. 24~25 / 대전 대전학생체련관
- 참석 : 시, 교육청, 5개 자치구, 4개 공사공단 직원 80명
- 특강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 직원)

❖ 청탁방지 상담실 설치

- 감사관실 회의실(영상녹화 기능)

❖ 청탁방지사담과 지정

- 시 본청 : 감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총무(관리)과장, 감사담당



19

9. 직원 교육

- ❖ 자기학습 프로그램 활용 교육: 7월~ / 매주 목요일
- ❖ 외래강사(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초청 교육
- 9월 5~12(3회) / 시청 대강당 - 2,300명
- ❖ 공직유관단체 직원 교육
- 9월 22~23(2회) / 시청 세미나실 - 500명
- ❖ 청탁금지법 업무 매뉴얼 직원 교육
- 9월 27일 / 시청 세미나실 (실과사업소, 자치구, 공직유관단체)



10. 시민홍보

- ❖ 청렴도시 대전 만들기 시민 토론회
- 7. 7(목) 15:00~ / 시청 대회의실 - 100여 명
- ❖ 청렴 캠페인 전개
- 9. 8(목) 14:00~ / 대전역 서광장 (대전 청렴네트워크 단체 150명)
- ❖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 11. 23(수) 13:30~ / 시청 대강당 (청렴연극, 특강, 일반시민- 500명)
- ❖ 홈페이지 청탁방지 알림방 메뉴 개설운영



11. 민·관 협력 “대전 청렴네트워크”

- ❖ 슬로건 : 청렴해서 행복한 도시 대전
- ❖ “대전 청렴네트워크” 출범 선포식
 - 일시 : 2016. 7. 7(목) 14: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여 : 경제 및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기관단체 100명
- ❖ 구성 및 운영 체계
 - 〈근거 : 대전청렴네트워크 운영 규정〉
 - 공동대표(5인), 운영위원회(22인), 실무위원회(11인) 구성
 - 상설협의체로 사무국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 ❖ 2016년 주요사업
 - 청렴도시 대전 만들기 시민토론회
 - 청탁금지법 시민참여 청렴 캠페인 및 강연회



12. 제도적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준

- ❖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훈령 제정
 - 청탁방지상담관 자문역할 / 7인
- ❖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기타

- ❖ 내부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직원 교육
 - 청탁방지법 관련 Q&A(8월)
 - 청탁방지법 해설집(9월)
 - 청탁방지법 업무매뉴얼(9월)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9월)
 - 한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 ❖ 홈페이지 청탁방지 알림방 메뉴 개설
 - 청탁방지법 및 시행령
 - 청탁방지법 업무 매뉴얼과 사례집
 - 청탁방지법 홍보 리플릿 및 교육 교재 등

13. 외국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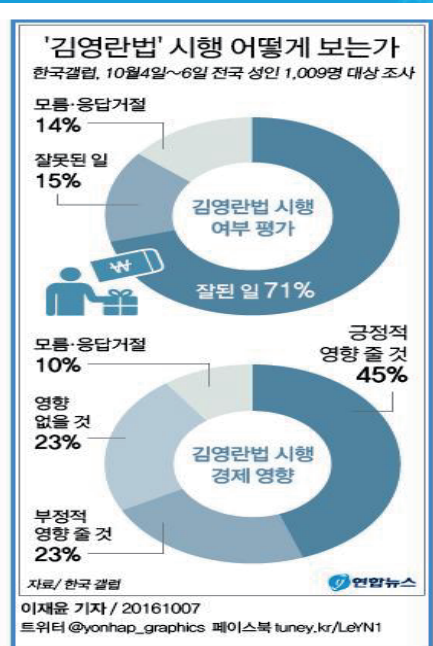


<일본 NHK의 이례적 만평>

<서울의 한 음식점 별실. '접대(接待)'라는 한자가 커다랗게 수놓인 병풍이 펼쳐져 있다. 이 방의 갑(甲)은 관직을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는, 배를 볼록 내밀고 앉아 있다. 태극기 모양이 들어간 큰 음식상이 '갑'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상징한다. 반대편에는 을(乙)의 입장인 기업인들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다. 산해진미가 차려진 상 위로, 술시중 드는 여성 종업원이 '갑'에게 잔을 올리고 있다. 풍채 좋은 '갑'은 한 손으로는 여성 종업원이 올리는 술잔을, 다른 손으로는 기업인이 바치는 커다란 선물을 받아 챙기며 탐욕스럽게 웃고 있다.>

| | |
|-------------|---|
| 일본 NHK | 이례적으로 만평까지 그려가며, 한국의 부패 상황 조롱 |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 “접대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 |
| 미국 CNN | “뇌물과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면서 한국의 부패 꼬집어 |
| 미국 블룸버그 | “재벌, 공기업, 일반기업, 검찰, 정치권, 스포츠계 등 전반에 부패가 팽배해 있다”고 비판 |
| 프랑스 AFP통신 | “한국에서 뇌물 스캔들은 수십년 동안 연례행사가 돼왔다”고 지적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부패 만연에도 김영란법 반대 목소리 많아” |

14. 국민 여론



- ✓ "국민 87% 김영란법 불편함 못 느낀다" 불편 10% 불과
- ✓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청탁금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묻은 결과
 -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였으며 14%는 의견 유보
- ✓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는
 -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 (31%),
 -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 (17%),
 - '부정청탁 줄어들 것' (14%),
 -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 (9%),
 -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 (9%),
 -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 (8%) 순

15. 앞으로는

청렴역량 향상을 위해

- ❖ 내실 있는 부패 방지 · 청렴 시책 추진
 -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공직윤리교육 함양과 역량강화 청렴 문화 정착 도모
 - 직위별 ·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마련 운영
 - 부패 유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청탁방지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 ❖ 민·관 협력 “대전 청렴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대전 청렴네트워크” 참여 단체 확대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청렴 사업 추진
- ❖ 찾아가는 청탁방지법 시민 교육 실시
- ❖ 홈페이지 청탁방지 사랑방 운영 내실화
-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 등 홍보 강화

26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국내기업 대응방안

백승재

EY 한영 전무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초대회장)

부정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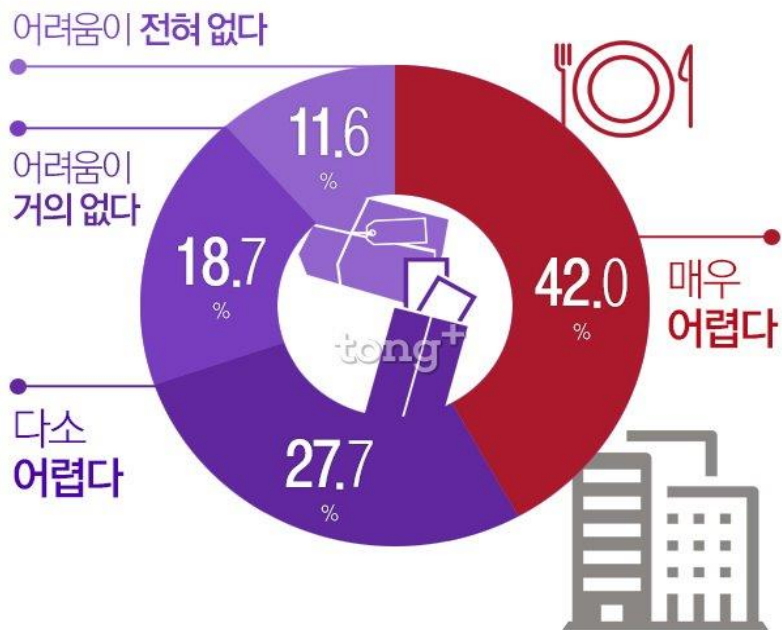
발표자 : 백승재 전무(EYHY GCO)

2016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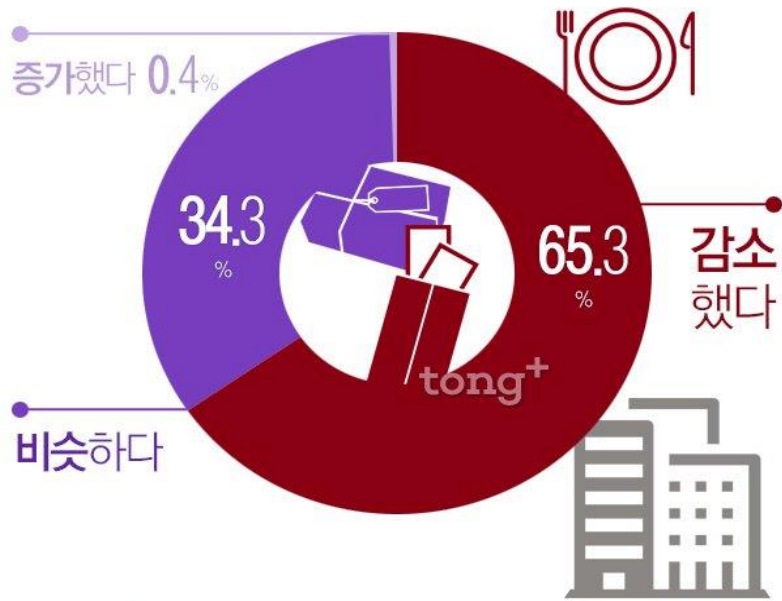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한영회계법인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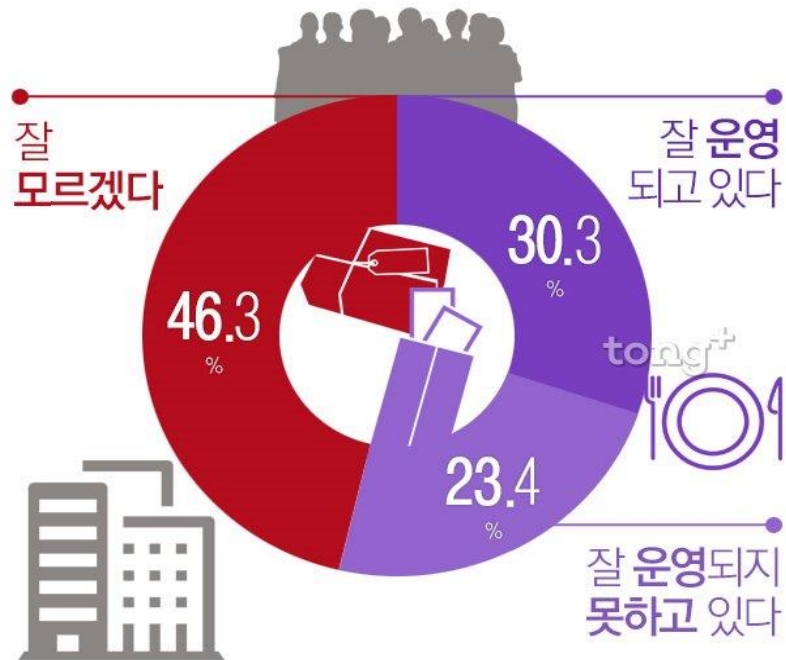
그래픽 tong+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상 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상황은?



그래픽 tong+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대상 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나?



그래픽 tong+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대상 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

김영란법 부작용 해소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48.0%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

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



37.3%

법령해설, 적용에 대한 홍보 확대



27.0%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지원책 마련



22.0%

그래픽 tong+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상 화훼, 농축수산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

1.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선물일까? 뇌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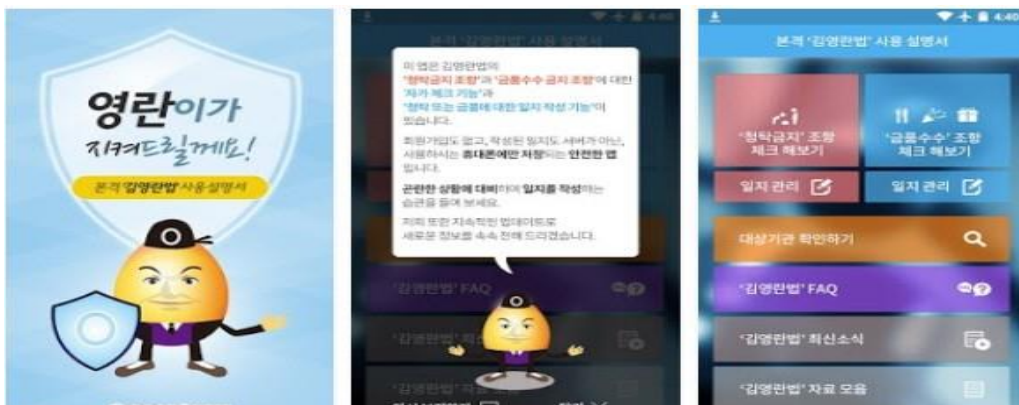
- 형법(뇌물, 배임수증) / 특가법 / 특경법
- 직무관련성 · 대가성 필요 / 법인처벌 x

1.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 16. 9. 28.부터는

| 구분 | BEFORE | AFTER |
|-----------|-----------------------|--|
| 적용대상 | 공무원/의제 공무원 | 공무원외 ①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② 공직자 등 배우자, ③ 공무수행사인 에도 적용 |
| 금품 수수의 처벌 |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으면 처벌불가 |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어도 쌍방 처벌 |
| 부정청탁의 처벌 | 금품수수가 없는 한 처벌불가 | 금품수수가 없어도 부정청탁 만으로 처벌 |
| 법인의 처벌 | 처벌불가 | 양벌규정 도입으로 법인 처벌 |
| 이익의 환수 | 몰수·추징만 가능 | 몰수·추징 외 이해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 의 환수 |

2. 대상기관등 확인

앱(app)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앱(app) 설치 후 “대상기관 확인하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폰만 가능).
- ▶ 대상기관 확인하기 클릭 > ‘법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검색

3.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 허용범위의 금품 등

- 1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2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
-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질병/재난/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 범위내에 일률적 제공되는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8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 허용범위의 금품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대통령령의 정하는 가액기준

| 구 분 |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
|------|-----|----|------|
| (만원) | 3 | 5 | 10 |


음식
 원칙 3만원
 +
 
선물
 원칙 5만원
 =
 합하여 5만원 이하

부조금
 원칙 10만원
 +
 선물+음식물
 =
 합하여 10만원 이하

-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기준
- ▶ 부가가치세 포함

3.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되는 금품등

| | | | | |
|--|--|--|--|---|
| <p>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  <p>농·축·수산물</p> |  <p>유가증권</p> |  <p>부동산</p> |  <p>초대권</p> |
| <p>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p>  |  <p>할인권</p> |  <p>식사 접대</p> |  <p>골프</p> |  <p>인사상 특혜</p>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을 초과한 가액 모두 뇌물이 되는 셈

4. 부정청탁금지법 10계명

| | |
|--|---|
| <p>1 기본 중 기본은 '3·5·10만원' 법칙이다</p> <p>3·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 땀 각각 3·5·10만원 이하로 · 위반 땀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소속 기관까지 처벌 '양벌규정' | <p>2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식사 3만원 이내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 관련해 친분관계 고려 안해줘 · 고교동창 사무관·기자·교사 만나도 한 명이 3만원 넘겨 대접 안돼 |
| <p>3 애매할땐 무조건 '더치페이'하고 영수증 챙겨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를 만났든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 문제 안돼 · 이해관계(인허가 등) 있는 공직자 만날때는 3만원 식사도 불허 | <p>4 결혼·장례 이외엔 경조사비 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돌잔치·생일 등 여타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 수수 불허 · 결혼·장례때 10만원 넘는 경조사비 받으면 초과분 돌려줘야 |

4. 부정청탁금지법 10계명



⑤ 결혼식때 식사대접 3만원 넘어도 돼

- 결혼식· 장례때는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는 허용



⑥ 식사, 선물 같이 대접할땐 합쳐서 5만원 이하로

-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로, 선물비용은 '5만원-식사비용'으로 제한



⑦ 처음 청탁은 거절, 두번째는 기관장에게 신고

- 1차 때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 2차는 서면 신고해야
- 이를 어긴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당할 수 있어



⑧ "입원, 검사 빨리받도록" 부탁 이젠 안돼

-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지인에게 부탁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은 적용, 민간병원은 적용 안돼

4. 부정청탁금지법 10계명



⑨ 아이 담임 만날땐 교무실에서...공개적 민원은 괜찮아

- 상시적으로 학생 평가하는 교사예겐 커피 한 잔도 주면 안돼



⑩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위법, 애매한 부탁 안꺼내야

- 청탁 성사 여부는 중요치 않아... 본인 위한 민원일 때는 처벌규정 없어

5. 부정한 청탁이란?

담당공무원이 행정조치를 할 경우 ▶ 공무원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하나

- ① “가능한 재량 범위 내에서 선처해주세요.”
- ② “이번 한번만 눈감아주세요.”

→ **부정한 청탁?**

법령위반 / 권한 남용이 핵심

5. 부정청탁의 금지 – 금지 사유

| | | | | |
|---------------------------|--------------------------------|-------------------------------|-------------------------------------|-------------------------------|
| 1 인가·허가등 업무 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등 인사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
|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등 처리·조작 |
| 11 징병검사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 13 행정지도·단속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등 개입 |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남용 |

포괄조항으로 인해 부정한 청탁의 범위가 광범위 『1~14 + 법령위반 또는 권한남용』

5. 부정청탁의 금지 - [예외] 청탁 가능사유

| 예외적인 경우 | | | |
|--|--------------------------------------|--|---------------------------|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

5. 부정청탁의 금지 - 제재

| 유형 | 위반 행위 | 제재 수준 | |
|--------------|---|--------------------------|-------------|
|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제재 없음 | |
|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금품등 제공 금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제공한 자 | 제재 없음 | |

6. 위반행위에 대한 거절, 신고, 반환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속지 필요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급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제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Page 23

EY한영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제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Page 24

EY한영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 기자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급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 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진행-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잡지 등에 실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축제 행사 등의 단순 진행-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쓰일 원고 작성- 법령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연주·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행위 |

7. 정부합동TF – 최근 해석 사례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관계부처 합동해석지원 TF'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부합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구체화

|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 부합여부 |
|--|--|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수수경위와 시기 등 종합 고려 |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 직무수행의 저해가능성 등 종합 고려 ※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3·5·10 이내라도 수수가 금지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예: 계약체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의 직접적 당사자가 된 경우) |

7. 권익위원회 – 최근 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EY | Assurance | Tax | Transactions |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15 Ernst & Young Han Young
© 2015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본 간행물은 요약된 형태의 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안내서로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밀한 연구의 대체자료로 사용하거나 전문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영회계법인 또는 EY 글로벌 조직의 어느 구성원도 본 간행물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Network Korea

CSR 및 반부패 국제 동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임홍재
2016.11.30(수)

TABLE OF CONTENTS

- 01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02 |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 03 | 반부패 국제 동향
 -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 (FCPA)
 - OECD 뇌물방지협약
 - 유엔반부패협약(UNCAC)
 - 영국 뇌물수수법 (Bribery Act 2010)
- 04 | 맺음: 충분한 사전주의 의무(due diligence)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HANGES & CHALLENGES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에의 도전

- ◆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
- ◆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기업 정보에 접근이 용이
- ◆ 가치와 도덕의 중요성
- ◆ 공공 재화와 민간 재화 간 경계 모호
- ◆ 국제 경제의 불안 증폭

DEFINITION & SPREAD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란?

- 기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 등)에게 지속가능한 가치(sustainable value)를 창출하는 것 / 자선, 재능기부, 박애를 넘어선 접근 /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주시/

Be just before you are generous. / The end should not justify the means.

- 금전적 기여를 하더라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가치를 기업의 경영전략, 정책, 관행, 운영에 내재화하지 않으면 이 금전적 기여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2. CSR의 확산 배경

1)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 ◆ 이해관계자의 요구
- ◆ 기업 평판 관리의 중요성
-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 ◆ 가치 주도 시대
- ◆ 인터넷 / 소셜미디어의 발달
- ◆ 고령화 사회

2) 이해관계자의 요구

- ◆ 투자자
- ◆ 협력사
- ◆ 소비자
- ◆ 정부
- ◆ 직원

CSR의 국내외적 동향과 UN Global Compact



CSR & PROFIT

A. 브랜드 이미지 제고·경쟁력·마케팅·운영효율성 제고

B. 안정적 경영 강화

C. 주주의 신용도 제고

D. 소비자 항의 위험도 감소

E. 이해당사자(정부, 사업파트너, 노동조합, 공급업체 등)과 관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업관계 유지

CSR의 국내외적 동향과 UN Global Compact



02

유엔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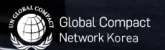
-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
- 목표: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비즈니스 전략과 활동에 통합
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등 유엔 목표 달성에 이바지
- 회원기업은 매년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 상황을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 배경
 - ⇒ 환경, 사회 이슈에 있어서 기업의 영향력 확대
 - ⇒ 유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 ⇒ 유엔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기구 발족 필요성



UN GLOBAL CO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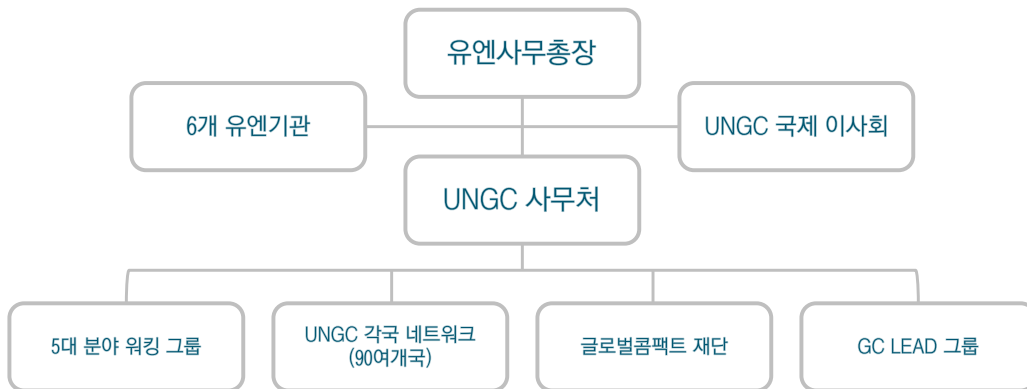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 1999.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WEF) 에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Global Compact 제창
- 2000.7 뉴욕 UN본부에서 Global Compact 발족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 단체 참석)
- 2007.1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주요 아젠다로 주관 추진
- 유엔과 기업의 신 파트너십은 21세기의 핵심 역량이 될 전망; 2011.8.10 반기문 사무총장은 향후 임기 5년 중 유엔이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언급
- 2015.6 Global Compact 설립 15주년 회의(GC+15: Business as a force for good) 개최
- 2016.6 UNGC Leaders Summit에서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 런칭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와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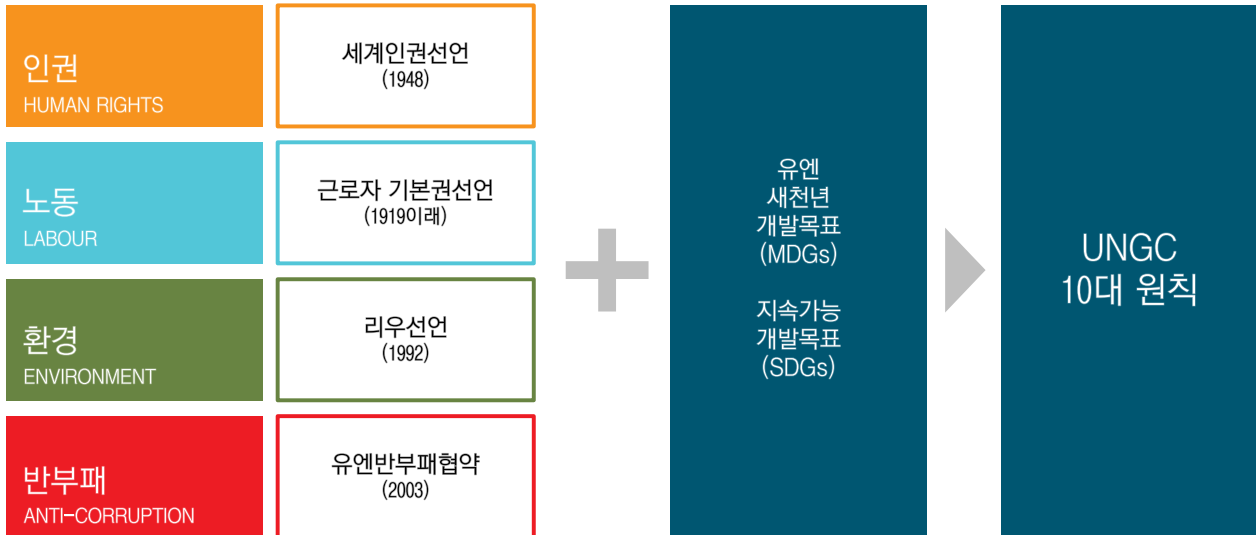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조직도



UNGC 10 PRINCIPLES

기존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4대 부문 10대 원칙 설정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인권>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두고
- ✓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권장
- ✓ 원칙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
- ✓ 기업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





UNGC 반부패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Anti-Corruption)

- 연 2회 회의 개최
- UNCAC 이행 촉구 및 이행 점검 시 UNGC 반부패 회의 개최
- 반부패 톨 제공, 연구, 훈련, 판례 등 국가별 부패정보 제공
-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내부 신고자 보호(protection of whistle blower), 회색지대이슈 (facilitation payment, gift, donation, travelling) 등
-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 장려
- 무임승차 방지 및 반부패를 위한 공동 노력, 신뢰조성 장려
- Action-Hub on Anti-Corruption
- Call to Action, 240여 개 회원사 참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반부패 노력

- 2008년 이래 매년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 2011.11. Global CSR Conference, UNGC Award 시상
- 2013.5.29 반부패 심포지엄(영국 반부패법 국내 소개)
- 2013.11.12-13 제2차 GCC 회의(준법, 감사 투명성 문제 집중 논의)
- 2014.4.18 반부패 우수사례기업 방문(지멘스 코리아)
- 2014.5.29 제주포럼 “반부패” 세션 개최
- 2014.7.3-4 2014 Youth CSR Conference 청소년 교육 확대
- 2015.5.19 UNGC Korea Leasers Summit (2015) “반부패 세션” 개최
- 2015.5.19 WB/Siemens Integrity Project “Fair Player Club” 발족 및 시행 개시



03

반부패 국제 동향



반부패 국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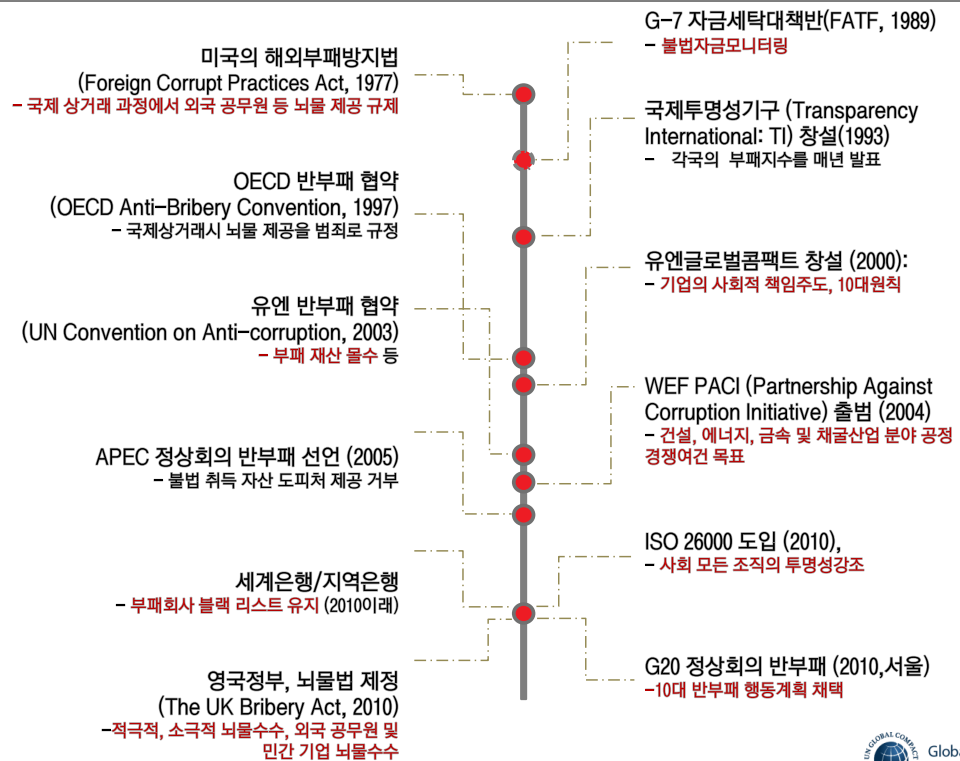
기업 반부패 관련 제도 강화 추세

- 2010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든 탄광, 석유, 가스 기업들은 자원 접근을 위해 국가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
- 최근 3년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소건수가 과거 전체 건수의 세 배 이상
- 2007년 전에는 뇌물 제공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 벌금이 수십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1조원을 넘어섬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움직임

- 미국의 담합 적발 사례 중 90% 이상이 내부자 신고로 이루어짐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정부 법률이 증가세 (47개 법률 중 12개가 최근 10년 사이에 제정)
-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오염된 아기 연고의 문제점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8,000억원의 벌금. 내부고발자는 1,000억원 포상금을 지급받음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이후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반부패 국제 동향 _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 명칭:
 - ✓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1977년 제정)
 - ✓ 기업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
- 적용 대상
 - 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기업
 - 나. 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다. 그 외 개인이 외국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최근 동향
 - ✓ 2008년 이후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
 - ✓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수사영역이 확대
 - ✓ 의료기기, 석유, 가스 등 부패구조가 드러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 수사





반부패 국제 동향 _ OECD 뇌물방지 협약

- 명칭: OECD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
 -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 1997년 채택, 1999년 발효 (**한국 1999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제정**)
 - ✓ **부속서(Commentaries)**를 통해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지침 제시
- 특징
 - 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기로 한 최초의 합의
 - 나. 뇌물제공자만 처벌
 - 다. **외국 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임명직, 선출직을 포함
외국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
- **동료 심사 (Peer Review)** 통해 각국 이행 점검



주요 내용

- 가.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협약 제1조 제1항)
 - ① 국제상거래에서 ②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③ '고의적으로' 외국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④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나. **외국공무원은 입법 · 사법 · 행정직 공무원 · 공공기관 ·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 +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협약 제1조 제4항 가호)
- 다. **처벌 수준: 효과적, 비례적,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협약 제3조 제1항)
(기능적 일치 Functional Equivalence)
- 라. 자국 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 +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 (협약 제2조 및 제3조 제2항) +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협약 제2조)
- 마.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
- 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 (협약 제10조)
- 사.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자금세탁법** 적용(협약 제7조)
- 아. 뇌물공여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장부**를 작성 하거나 불법 · 미확인된 상거래 혹은 허위지출을 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





주요 내용

자. 주요내용 및 특징

-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 포괄적으로 정의
- 형벌(penalty) '효과적(effective), 비례적(proportionate), 억제적(dissuasive)'
- 뇌물 및 뇌물수수 행위로 얻는 이익은 압류 및 몰수의 대상
- 수행기간 등에서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제공 시 부과되는 형벌과 상응하는 수준
- 장부 외 회계 및 뇌물수수 은닉을 위한 회계 및 감사 기준 존치 요구
- 추방 등 범죄 수사 등에서 사법 공조

차. OECD 뇌물수수 실무그룹이 협정의 이행 및 감시

- 1단계: 국내 이행법의 적절성
- 2단계: 국내법 강제이행을 위한 기구의 존치
- 3단계: 이행의 진전 및 흡결 개선
- 2012 TI 발표
 - ✓ 7개국 적극이행(세계수출의 28%), 12개국 보통이행(세계수출의 25%)
 - ✓ 미국 275건, 독일 176건, 스위스 52건, 이태리 32건, 영국 23건 등

카. 도전

- 뇌물수수의 공급측면만 취급
 - ✓ 뇌물요구(Solicitation), 금품 강요(Extortion)에 취약
 - ✓ 요구 및 강요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HLRM(High-Level Reporting Mechanism) 토의 중
- 정당, 정당요원, 공직후보자, 외국 자회사(subsidiary)에 대한 규정 미흡
- 민간부문 내에서의 부패(private to private) 규정 부재
-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에 대한 규정 부재
 - ✓ 2009년 OECD 이사회는 급행료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권고
- OECD 협약과 여타 반부패 협약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간 협력 강화 필요
 -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주요 무역국의 가입 필요



반부패 국제 동향 _ 유엔반부패 협약(UNCAC)

가. 유엔이 2000년 논의 시작된 반부패 라운드결과, 2003년 유엔총회서 채택, 2005년 발효

167개국 비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참여)

나. 한국은 2008년 비준, 2008년 협약 이행

- ✓ 법률채택,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다. 유엔협약 구성

- ✓ 총 28개 조항, 각국은 민간부문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
- ✓ 비밀장부, 허위지출, 허위 문서 등 금지
- ✓ 민사, 행정, 형사상 처벌부과, 기업뇌물 범죄화 입법 조치 요구
- ✓ 국제협력으로 범죄인인도, 이송, 범죄수익 몰수, 부패 자산 반환 등 공조 제공

라. 협약관리: 당사국총회(유엔 마약기구 UNODC)

마. 국가별 이행상황 매2-3년 정기심사





반부패 국제 동향 _유엔반부패 협약(UNCAC)

바. 주요내용 및 특징

- **국내외 부패,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강제이행**
- **공공부문, 민간부문 내 부패, 착복, 밀거래에 의한 부의 축적, 직권 남용, 영향력 거래**
- **사법공조, 추방, 공동조사, 해외은행 재산 회수 등 국제협력**
- 일부 규정은 강제적, 일부 규정은 일반적 성격
- 경제의 범세계화, 부패의 대규모화 및 확산으로 유엔협약의 효과적 이행 긴요
- **국제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
 - ✓ 외국 공무원 및 공의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의 형사처벌 및 법 강제이행 (16조)
 - ✓ **뇌물수수(적극적 부패) 및 금품요구(소극적 부패) 모두 형사처벌**
 - ✓ OECD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만을 처벌 / 외국공무원의 금품요구는 처벌하지 않음



반부패 국제 동향 _유엔반부패 협약(UNC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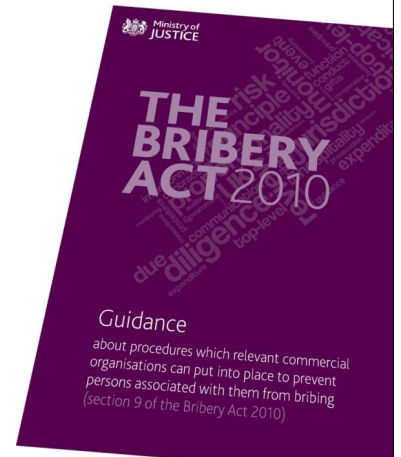
- **OECD 협약 보완**
 - ✓ 영향력 거래, 직권남용, 밀거래에 의한 부의 축적 (20조, 21조)
 - ✓ 법인의 책임(liability of legal persons)규정은 의무조항
 - ✓ 뇌물범죄의 처벌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 ✓ 신고인 보호(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는 자율 규정
 - ✓ 뇌물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compensation for damages) 허용
 - ✓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감소해주거나 면책 부여
 - ✓ 재산회수(asset recovery)규정은 부패공무원이 외국에 은닉한 재산을 회수 규정
- **예방 조치**
 - ✓ OECD 협약에 없는 규정
 - ✓ 반부패 정책에 포함될 내용 (법의 지배, 청렴, 투명성, 책임성)
 - ✓ 반부패 기관 (정책 이행, 독립적 지위)
 - ✓ 공무원 행동 지침 (청렴, 정직, 책임, 법 위반 신고, 외부활동, 투자, 재산, 선물 등 공개)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 **뇌물공여죄(제1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
 - 관련된 직무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타인을 유도
 -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에 대해 보상
 - **뇌물수수죄(제2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음
 -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제6조)**
 - 사업 또는 사업활동 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여 외국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제7조)**
 - 영리단체 또는 그 영리단체와 관계 있는 자가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또는 영리단체를 위한 사업의 수행에서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
- ✓ 뇌물제공예방절차 시행 입증 시엔 항변을 통해 면책 가능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처벌(제11조)

- **제1조, 2조, 6조 위반 시**
 - ✓ 약식판결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법정최고액 내 벌금형 또는 병과
 - ✓ 기소판결의 경우 최대 10년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 **제7조 위반 시**
 - ✓ 기소판결에서 벌금형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제 12조): 다음의 경우 소송절차는 영국에서 진행

- 제1조, 제2조, 제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영국 내에서 발생 시
- 위 행위가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행위자가 영국 내에서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 행위자가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제12조 4항(국민, 시민, 국적자, 영국 보호민, 영국 거주자, 영국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
- 제7조의 경우,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영국 내 또는 영국 외 어디에서 발생했든지 7조 범죄가 성립하며, 소송절차는 영국 내에서 진행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 일반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
- 위험도에 기초한 접근
- 법원의 판결권 강화(뇌물수수 징역형 7년에서 10년으로)
- 위반행위 확대(뇌물 수수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기업에 법적 책임 부과 등),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든 뇌물제공행위 규제 대상
- 기업에게 방어권 부여
- 접대, 홍보, 기타 사업비용
 - 적절한 수준의 접대, 홍보, 기타 유사한 형태의 사업비용 금지하지 않음
 - 뇌물로 인정하려면, 접대,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 확인 필요
 - 호화로운 접대, 고비용 접대는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 추론이 가능



CORRUPTION

Your NO counts

SIX PRINCIPLES

- 제 1 원칙: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proportionate principles)
- 제 2 원칙: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 제 3 원칙: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제 4 원칙: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 제 5 원칙: 의사소통(훈련 포함)(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 제 6 원칙: 감시와 점검(monitors and review)



SIX PRINCIPLES

제 1 원칙: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proportionate principles)

각 기업은 해당 규모와 사항에 맞는 절차를 채택 준수

제 2 원칙: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고위 간부급에서부터 부패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장려금지

제 3 원칙: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위험평가시행을 통해 절차와 위험도에 대해 파악

제 4 원칙: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직원과 관련기관에 대해 충분한 사전 주의 노력

제 5 원칙: 의사소통(훈련 포함)(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반부패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 및 교육 실시

제 6 원칙: 감시와 점검(monitoring and review)

반부패관련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 및 검토 실시



영국의 2010년 뇌물법 (Bribery Ac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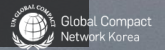
ELEVEN CASE STUDIES

- 사례 1: 제1원칙 금행료 (Facilitation payments)
- 사례 2: 제1원칙 비례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 사례 3: 제1원칙 및 6원칙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 사례 4: 제1원칙 및 제5원칙 접대 및 홍보비 (Hospitality and Promotional expenditure)
- 사례 5: 제3원칙 위험도 평가 (Assessing risks)
- 사례 6: 제4원칙 대행사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 (Due diligence of agents)
- 사례 7: 제5원칙 의사소통 및 훈련 (Communicating and training)
- 사례 8: 제1,4 및 6원칙 지역사회 보조 및 자선기부 (Community benefit and charitable donations)
- 사례 9: 제4원칙 대행사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 (Due diligence of agents)
- 사례 10: 제2원칙 고위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 level commitment)
- 사례 11: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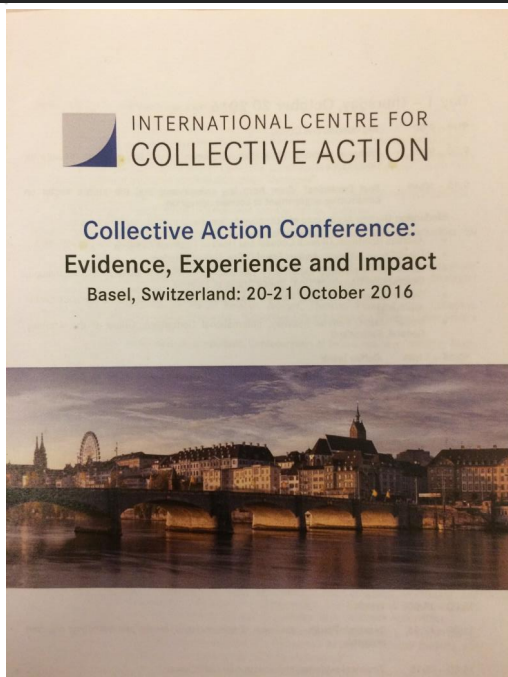


맺음말

- Without combating corruption, the fight against all sustainability challenges will fail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2: “Corruption is an impedi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SDGs”
- **Negligence is Risk, Due Diligence is Rescue(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
 - 소홀(Negligence): 기업설립과 발전에 100년, 명성 추락에는 1일, 명성 추락의 주 요인은 부패 / 비리
 - 예방과 경계의 중요성 대두
 - 충분한 사전 주의 의무(Due Diligence), 건전한 지배구조의 핵심 / 입증 시 방어권 부여 및 면책
 - 반부패를 최우선순위로 기업의 전략, 정책, 운영에 내재화 및 내부통제 강화
 - CEO, 이사회 등 임원진의 반부패 의지 및 반복적 소통 / 준법윤리 담당자의 직보체계 운영
 - 내부고발자 보호, 급행료·선물·기증·여행경비 등 회색지대 이슈 관리감독
 - 반부패 부서에 우수 직원 배치 / 반복적 훈련
 - 공동노력에 참여 : 경쟁자 및 여타 시장 참여자와 공동 노력 전개, The rotten apple injures its neighbors. 상호 학습 및 상호 견제
 - 국제 동향 파악 : OECD 뇌물방지협약, 유엔반부패협약(UNCAC), 영국 뇌물법(Bribery Act 2010), UNGC 워킹그룹



International Centre for Collective Action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idence, Experience and Impact (Basel, Switzerland: 20-21 Oct. 2016)

- Law Enforcement and the Private Sector on Constructive Engagement to Counter Corruption
- Financial Markets, Corruption and Collective Action
- Impact Stories
- Evidence of Effectiveness, Results and Advocacy
- Case Studies Specific to National Contexts in Asia and Opportunities for Lessons Learned
- The Role of Trust in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in Conflict Zones
- Tackling Bribery from the Demand Side





Network Korea
THANK YOU



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소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